

● 제32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7)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4)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운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1314**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번호 1317**

**【김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94**

## I. 조례안 개요

### 1. 발의자 및 제안경위

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4)

(1) 발 의 자 : 운영희 의원(찬성 10명)

(2)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3일

(3)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7)

(1) 발 의 자 : 이희원 의원(찬성 23명)

(2)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6일

(3)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394)

(1) 발 의 자 : 김영옥 의원 외 2명(찬성 8명)

(2)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6일

(3)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 2. 제안이유

### 가. 윤영희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314)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만 8,396명이고, 마약 범죄 압수율 적용 시 실제 투약자가 약 53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마약중독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나, 마약치료비 예산 부담으로 마약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이희원의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317)

- 현재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중독예방과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마약류중독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시장은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다. 김영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394)

-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학원가 마약음료 등 마약류 피해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나, 현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재활 프로그램 등이 분절적이고 마약류 대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를 도입하여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통해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윤영희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314)

- 서울시장이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나. 이희원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317)

-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을 시

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김영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394)**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윤영희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314)**

- (1)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입법예고 : 2023. 10. 26.~ 2023. 10. 30.
-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나. 이희원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317)**

- (1)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입법예고 : 2023. 10. 26.~ 2023. 10. 30.
-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다. 김영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394)

- (1)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3) 입법예고 : 2023. 10. 26.~ 2023. 10. 30.
-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주요 내용별 검토

#### 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부담(의안번호 1314)

- 운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314)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 이 때 중독자등에 대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이

법 하위법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의 비용 부담 보조를 근거로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5:5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마약류관리법」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3. 8.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1. 1.] 제40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비용 부담) 국가 또는 시·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그런데 과거 서울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한 병원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약 치료비 미수금이 5억 원에 달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8년 스스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해제한 사례가 있었고<sup>1)</sup>, 이후에도 매해 마약치료비 예산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sup>2)</sup>.

1) 자료: 서상민, 2023.09.0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회 시의원, 마약치료비 ‘외상’ 하는 서울시...마약치료보호 의료기관에 재원과 인력 추가지원 필요”, 케이에스피뉴스,

<https://kspnews.com/1448356>

2) [제403회 국회(임시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최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38호))



< 마약치료비 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치료보호기관 지정 해제한 서울의 한 병원 관련 여론 >

발표기관	보도일시	보도내용
KBS뉴스3)	2021.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강남 한복판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5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운영돼 오다가, 3년 전 지자체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 받지 못한 치료비가 5억 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입니다.</li> <li>• [조성남/전 강남 을지병원장 :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예산이 다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외상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죠. 미수금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재단에서도 부담이 되고..."]</li> <li>•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li> <li>• [마약중독 치료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마약 관련해서는 진료를 안 보고 있어요. 여건상 과장님들께서 진료를 힘들어하셔가지고..."]</li> <li>•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지정 병원은 전국에 21곳. 진료를 거부하거나 장기 대기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면, 당장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3곳에 불과합니다.</li> <li>• 치료 과정이 다른 중독 치료보다 힘든데다 한해 정부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li> </ul>

-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치료보호기관 예산집행액과 미지급금 내역에 따르면, 마약중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 치료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매해 미지급금이 증가하였음.

		2019		2020		2021		2022		2023.5	
예산액	집행액	1억5000	1억5000	2억4375	2억4375	6000	6000	1억	6223	1억	9601
미지급금액		1억6361		102		2949		6223		7700	
미지급금 지급시기		20.5 지급 20.10 지급		21년 지급		22년 지급		23년 지급		23년 지급	

출처: 「마약치료비 ‘외상’하는 서울시...마약치료보호 의료기관에 자원과 인력 추가지원 필요」, 보도자료(2023. 9. 1.)

3) 자료: 서병립, 2021.10.23., “‘재정난 때문에’ ...마약 중독자 안 받는 치료보호 지정병원,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이처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가 나타나자, 최근 국회에서는 이 법을 개정 (신설 2023. 8. 16.)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마약류관리법」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 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 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 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중략>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3. 8.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1. 1.] 제40조

- 운영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314)은 이처럼 그간 적시에 지급되지 못했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여지며, 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 소관부서 또한 이번 운영회 의원(의안번호 1314)이 발의한 개정안에 별도 이견 없이 동의 의사를 표시함.



- 최근 국내 마약 확산 실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표 상단 좌측).

현행 「마약류관리법」	시행예정 「마약류관리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23. 8. 16.&gt;</p>
<p>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lt;개정 2023. 8. 16.&gt;</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3. 8. 16.&gt;</p> <p>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23. 8. 16.&gt;</p>
	<p>[시행일: 2024. 2. 17.]</p>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이에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최근 국회에서 법목적 을 개정(신설 2023. 8. 16.)하여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표 상단 우측)4).
- 또한 이 법 개정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마약류 중독 등 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추가하였음(표 하단 우측).
- 따라서 이번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317) 역 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상에는 특별 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시장의 책무 재정비 필요) 단 현행조례 제3조제2항에서 시장 의 책무와 관련하여 이미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의 신설로 각각의 항에 다시 홍보·교육·연구 등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장 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제2항에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 과 같음)

4) [제404회 국회(임시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903호))

<p>&lt;신 설&gt;</p>	<p>③ 시장은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 (시행일자) 또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회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317)의 시행 일자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2024년 2월 17일부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 소관부서 또한 이번 이회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317) 제3조제3항의 신설대신 기존 제2항에 중독 등 폐해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시행일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의안번호 1394)

- 김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394)은 마약류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마약관리센터’ 도입이 필요한 상

황이므로,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조 신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6조(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u>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 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마약류 중독자, 가족,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 전화 운영</u></li> <li>2. <u>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u></li> <li>3. <u>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u></li> <li>4. <u>마약류 중독자 상담·치료·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u></li> <li>5. <u>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u></li> </ol> <p>③ 시장은 센터를 시립병원이 운영하거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p>

<p>제6조·제7조·제8조 (생략)</p>	<p>및 재활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의료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⑤ 시장은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제8조·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 제8조와 같음)</p>
-------------------------	--

- 개정안은 마약관리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마약류 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치료보호, 재활, 조사 및 연구, 이에 더하여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면서(안 제6조제2항),

이러한 마약관리센터에 관한 업무 수행을 시립병원이 운영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민간의료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6조제3항및제4항).

또한 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 증진,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필요성) 「마약류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0여년간 인터넷, SNS의 발달로 마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마약사범이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마약류 대응 정책의 환경이 변화했음<sup>5)</sup>.
- 이에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 및 단속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자에 대한 예방·단속·재활이라는 전반적인 관리 영역에 걸친 종합적 대응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져 왔음.

특히 최근들어 사회재활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마약사범자의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재수요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sup>6)</sup>.

- 그러나, 최근 5년간 마약사범자의 재범률은 약 36%로 마약사범자 3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실정인 반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야 할 중독재활센터의 경우 현재 전국 2개소(서울, 부산)에 불과한 등 정책적 수요에 비해 그에 상응한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sup>7)</sup>.

5) [제404회 국회(임시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78호))

6) [제404회 국회(임시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78호))

- 이 같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마약류 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도입 필요성은 있어 보임.
- 또한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마약류중독자 등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때, 특별시장은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의료기관 중 시설 및 인력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아울러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그리고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시행예정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생략.>

[시행일: 2024. 2. 17.] 제2조의2

- 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수행 기능 임의적 사무로 조정 필요)  
서울시가 지난 9월 13일 수립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계획’에 따르면, 신설 예정(24년 9월)인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경우,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평병원’ 내에 설치하여 서울시가 자체 수행할 계획임.
- 우선, ‘은평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서울시 마약 대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존 치료·재활시설 및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초기 설치 비용 및 운영비용 절감, 진료 노하우 활용 등의 강점을 갖고 있음.

- 단, ‘마약관리센터’ 운영 시 통합적인 중독치료과정 운영을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요구됨. 이에 서울시의 ‘연도별 인력 확충 계획’을 보면 2024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을 포함해 인력 총 13명을 충원할 계획임.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연도별 인력 확충 계획>

● 연도별 인력 확충 계획

연도	총 계 명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임상 심리사	임상 병리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조 심리요원	약사	연구 인력
24~26	38	6	10	6	1	9	2	1	3
24	13	2	2	2	1	3	1		2
25	14	3	4	2		3	1		1
26	11	1	4	2		3		1	

※ 자료: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2023.9.13.)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계획.

- 그런데, 2023년 현재 ‘은평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현원을 살펴보면, 정원(12명) 대비 현원(7명)이 5명이나 부족해 정원율은 58%에 그쳤음. 이마저도 지난 3월 공백 36개월만에 의사 1명을 충원하여 정원율이 올라간 것임.

<최근3년 서울시립 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현원 관련 현황>

(단위 : 명)

진료과	연도	분기	의료진 정원		채용 인원	퇴직 인원	신규채용 시 공백기간
			정원	현원			
정신건강의학과	2021	1	12	6	-	1	'21.1월 면직
		2	12	6	-	-	
		3	12	6	-	-	
		4	12	5	-	1	'21.10월 면직
	2022	1	12	5	-	-	
		2	12	6	1	-	'22.5월 채용(공백 26개월)
		3	12	5	-	1	'22.8월 면직(병원장)
		4	12	6	1	-	'22.11월 병원장 채용(공백 3개월)
	2023	1	12	7	1	-	'23.3월 채용(공백 36개월)
		2	12	7	-	-	
3		12	7	-	-		

※ 자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2023.11.14.)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처럼 만성적인 ‘은평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부족 문제로 2021년 4월 1일부터는 당일 외래 접수 진료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 진료실적도 ‘21년 38,448명, ’22년 34,289명, ’23년 9월 기준 24,6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립 은평병원 홈페이지 안내문>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확대 운영 안내>**  
 ○ 시작 일 : 2023년 7월 3일(월)  
 ○ 진료대상 : 청소년, 마약범죄 초범 및 피해자, 자의 치료 희망자 등  
 ○ 진료방법 : 전화 예약 후 방문(02-300-8250/8200)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안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2021년4월1일부터 당일 외래 접수 진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 진료 일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일에 내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약변경 후 내원  
 ○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실 : 02-300-8250

서울특별시 | 전가수소자등차이문차의무은행기간내 판매승인 신청 | 서울소식 | 응담소 | 정보공개 | 분야별정보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병원소개 | 병원이용안내 | 진료안내 | 의학정보 | 지원부서 | 전문진료센터

정신건강의 허브병원  
 바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이 만들어 나갑니다.

진료일정 | 의료진소개  
 진료예약 | 건강검진  
 입·퇴원결차 | 자원봉사

※ 자료: 2023년 11월 9일 오후 21시 은평병원 홈페이지 검색 기준

-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아니라 “수행할 수 있다.” 등의 임의적 사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주체 관련 정비 필요) 또 안 제6조제3항은 이러한 마약관리센터에 관한 업무 수행을 시립병원이 운영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민간의료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

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이 '마약관리센터'를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평병원' 내에 설치하여 서울시가 자체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므로, 민간 위탁 관련 조문인 안 제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은 정비가 필요해 보임.

또한 현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때에는, 공립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도 시설 및 인력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여 운영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아 보임.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종사자 처우 관련 조문 필요성) 끝으로, 안 제6조제5항은 이 '마약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 증진,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아직 신설(24년 9월 예정)되지도 않은 센터의 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 소관부서는 이번 김영옥 의원(의안번호 1394)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별도 이견 없이 동의 의사를 표시함.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가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호보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때 중독자등에 대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5:5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과거 서울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한 병원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약치료비 미수금이 5억 원에 달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해제한 사례가 있었고, 이후에도 매해 마약치료비 예산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자,  
  
최근 국회에서는 이 법을 개정(신설 2023. 8. 16.)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 윤영희 의원의 개정안(의안번호 1314)은 이처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적시에 지급되지 못했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의 발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또한 이 법 개정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추가(신설 2023. 8. 16.)하였는데,
- 이번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317) 역시 상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겠음.

단 현행조례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이미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교육과 관련된 조문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제3항의 신설보다는 시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제2항에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례 시행 일자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2024년 2월 17일 부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끝으로 김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394)은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마약 관리센터’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난 9월 13일 수립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계획’에 따르면, 신설 예정(24년 9월)인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경우,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되어 있는 ‘은평병원’ 내에 설치하여 서울시가 자체 수행할 계획 임.
- 그런데 은평병원이 ‘마약관리센터’ 운영 시 통합적인 중독치료과정 운영을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현재 은평병원은 만성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부족 문제로 당일 외래 접수 진료가 불가하거나 매년 외래환자 진료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아니라 “수행할 수 있다.” 등의 임의적 사무로 규정하는 방안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마약관리센터'를 '은평병원' 내에 설치하여 서울시가 자체 수행할 계획이므로, 민간 위탁 관련 조문인 안 제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은 정비가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5항의 경우, 아직 신설(24년 9월 예정)되지도 않은 센터의 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문 의 처
-------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
--------------------------